성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수경 의원외 2인

2. 제정이유

○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점차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지위향상과 복리증진 및 전문 인력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실질적인 육성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여성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·공급하도록 책무 부여(안 제3조)

나. 군수가 사업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(안 제4조)

다.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추진해야할 사업내용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(안 제6조)

라.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강구해야 될 시책 규정(안 제8조)

4. 관련법령

○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

5. 검토의견

□ 본 제정 조례안은

○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에 의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하여

○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성주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, 지위향상, 모성보호, 보육여건, 삶의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

○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 입니다.

□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○ 조례안의 구성은 **전문11조와 부칙**으로 되어 있으며,

○ 안 제3조에서는

■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, 전문인력화 등을 위한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를 명시하였고

○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

■ 여성농업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,

○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

■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한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

○ 안 제8조에서는

■ 귀농 및 이주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,

○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

■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과 육성정책 자문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□ 그 동안 여성농업인은 남성 못지않게 농업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을 받아 왔으며, 아울러 농업활동과 더불어 출산, 보육, 가사노동 등 많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농촌에서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농촌과 여성농업인의 현실입니다.

□ 따라서 이수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

○ 젊은이들의 이농현상, 자녀들의 교육문제, FTA 등 오늘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**농업, 농촌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생산의 주역인 여성농업인들**에게 농업경영체를 이끄는 공동경영인으로써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**행·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**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.

□ 결론적으로,

○ 본 조례안 제정으로 앞으로 성주군 여성농업인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 농가의 가정생활은 물론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공동화를 막을 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농촌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되며,

○ 조례안의 구성과 체계, 내용 등이 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